서울특별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6월 9일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징



1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 중구는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여 활성화를 기하고 통일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행기관의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~ 안 제2조).
- 나. 대행기관의 운영·사무 처리 등 규정(안 제3조).

다. 대행기관으로서 필요한 경비 등 관련된 행정 재정적 지원 규정(안 제4조)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법인:단체의 경우에는 법인: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(을지로6가 18-14) 의회사무과

- 전화: 02)3396-8157 팩스: 02)3396-9055

- E-mail : queen@junggu.seoul.kr

서울특별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가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"이란 「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(이하 "통일자문회의"라 한다)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를 말한다.
- 제3조(운영·사무처리 등) 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 이라 한다)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.
 - 1.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구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
 - 2.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 - 3.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.
 -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.

- 제4조(경비의 지원)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구의 여론수렴 사업
 - 2.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
 - 3. 서울특별시 중구 및 타 지역 간의 평화통일 논의 활성화 사업
 - 4.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
 - 5.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
 - 6.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,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**제5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**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「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6조(지도·감독)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- 제7조(행정 지원)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8조(공공시설의 이용)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,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.
- 제9조(표창)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「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

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